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민선6기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나.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인력 및 재난안전 조직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620명 → 1,627명(+7명)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1) 일반직 : 1,581명 → 1,588명(+7명)

• 6급이하 : 1,481명 → 1,488명(+7명)

2) 연구직 : 3명 → 4명(+1명)

3) 지도직 : 34명 → 33명(△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내 운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0명”을 “1,6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92명”을 “1,59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7	1,6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588	1,588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488	1,488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20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7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92</u> <u>명</u>	1.----- <u>1,599</u> <u>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0	1,620						총 계	1,627	1,62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581	1,581						일반직 계	1,588	1,588					
3급	1	1						3급	1	1					
4급	10	5	1	1	1	2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481	1,481						6급이하 소계	1,488	1,488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3	3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4	34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지도사	30	30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8.7.3., 2013.12.4.>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민선6기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1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와 '1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조정할 경우 '15년 606,038천원을 포함하여 '19년까지 3,269,39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소계(a)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세출	인건비(b)	606,038	629,066	652,970	677,782	703,537	3,269,393
□ 총 비용(b-a)		501,038	524,066	547,970	572,782	598,537	2,744,393

4.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계	606,038	629,066	652,970	677,782	703,537	3,269,393
직급조정(9명)	134,630	139,745	145,055	150,567	156,288	726,285
정원순증(7명)	471,408	489,321	507,915	527,215	547,249	2,543,10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유현(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대상

가. 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 9명 직급상향 조정

2. 비용추계 방법

가. 본 개정안은 '15년도 기준인건비상 증원가능 인력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 '14.12월)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행정자치부, '15.4월)에 따른 순증인력 7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인력 직급조정 9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순증분은 '15년도 공무원 1인당 기준 인건비 단가 67,344천원으로 적용하고, 직급조정분은 직급상향 차액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5년이후 '19년까지는 201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의 경우 1인당 매년 30,000천원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권 순 서
	담 당	김 현 주
	담 당 자	강 유 현 (480-6773)